군산시 공고 제2020-2355호

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군 산 시 장

#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 1. 개정이유

- □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개정으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
- 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(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)에 따른 다면평가 조항 신설

## 2. 주요내용

- □ 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5조의3)
  - O 별표15 수정 및 별표16(가산점 부여기준) 신설
- □ 다면평가의 방법, 절차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9조)
  - O 다면평가 실시에 따른 방법 및 절차
    - 평가자 구성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작성 등
    - 평가 요소(시정기여도・업무추진실적・업무처리능력・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

- O 다면평가 결과 활용
  -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참고

# 3. 참고사항

- 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- 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
- □ 입법예고 : 2020. 11. 19. ~ 12. 4. (15일, 기간단축)
  - ※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,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

### 4. 의견제출

- □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행정지원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의견 제출사항
  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  - 의견 제출자의 성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
- □ 의견 제출할 곳
  - 우)573-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(454-2253, FAX 454-2229)
- □ 의견제출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(063-454-22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O 성 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| 규칙안 내용   | 찬성 | 여부 | 의 견 | 비고   |
|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|
| 11 역한 대중 | 찬성 | 반대 | 의 긴 | ы т.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

### 군산시 규칙 제 호

#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 중 "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"를 "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3"으로 한다.

제25조의3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 중 "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"를 "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3"으로 한다.

제25조의3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)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제25조의3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은 [별표 16]과 같다.

- 제29조(다면평가의 방법,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) ①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, 동료,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 · 업무추진실적 · 업무처리능력 ·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.
  - ③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,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으며, 역량개발 ·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.

[별표 15], [별표 16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3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15]

#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(제25조의2 관련)

## 1. 5급부터 9급까지

| 계급<br>직렬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급  | 6급 • 7급  | 8급 • 9급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행정, 세무,<br>교육행정,<br>사회복지,<br>기업행정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, 세무사,<br>변리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<br>경영·기술지도사(지도사자격시험<br>합격자에 한함)  | 사회복지사 1급   | 사회복지사 2급  |
| 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정보통신)   | 기사(정보처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정보통신)  | 산업기사(정보처리, 정보기술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)   |
| 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급 정사서   | 2급 정사서   | 준사서   |
| 공업<br>(기계)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철<br>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, 용접,<br>금형, 산업기계설비, 전기응용, 산업<br>계측제어, 전자응용, 컴퓨터시스템응<br>용, 정보통신, 항공기관, 항공기체,<br>기계안전, 공장관리, 소방, 품질경영,<br>조선, 소음진동), 운송용조종사     | 기사(일반기계,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기계설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업기계, 전기, 산업계측제어, 전자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항공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조선, 선박기계, 반도체설계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교통) 기능장(기계가공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 금형제작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배관, 전기, 전자기기, 통신설비, 항공정비, 가스) 사업용조종사, 항공사, 항공기관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비사 | 산업기사(윤활관리, 컴퓨터응용가공,<br>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기계설<br>계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 관리, 철도<br>차량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 건설기<br>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치공구 설계,<br>정밀측정, 용접, 금형, 기계정비, 판<br>금제관, 농업기계, 배관, 전기, 산업<br>계측제어, 전자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전자,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전<br>파전자통신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항<br>공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<br>소방설비(기계분야), 영사, 교통, 조<br>선) |
| 공업<br>(전기)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<br>기응용, 철도전기신호, 전기안전, 소<br>방, 품질경영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<br>용, 컴퓨터시스템응용, 원자력발전,<br>방사선관리) 방사선취급감독자, 방<br>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), 원자로<br>조종감독자,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,<br>원자로조종사 | 품질경영, 소방설비<전기분야>, 승<br>강기, 산업계측제어, 전자, 컴퓨터시<br>스템응용, 반도체설계, 원자력발전,<br>에너지관리)<br>기능장(전기, 전자기기)  | 산업기사(전기, 철도전기신호, 산업<br>안전, 소방설비<전기분야>, 품질경<br>영, 승강기, 산업계측제어, 전자, 컴<br>퓨터시스템응용, 전자계산기제어, 에<br>너지관리)   |

| 계급<br>직렬           | 5 급  | 6급·7급   | 8급 • 9급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|
| 공업<br>(금속)         | 기술사(금속재료, 표면처리, 금속가<br>공, 금속제련, 비파괴검사, 품질경영)   | 기사(금속재료, 방사선비파괴검사,<br>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<br>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<br>누설비파괴검사, 품질경영)<br>기능장(금속재료, 표면처리, 주조, 압<br>연, 제선, 제강)   | 산업기사(금속재료, 표면처리, 주2금속제련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:비파괴검사, 차기비파괴검사, 침투: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누설:파괴검사, 품질경영) |  |
| 공업<br>(섬유)         | 기술사(섬유, 의류, 품질경영)  | 기사(섬유, 의류, 품질경영, 산업안<br>전)  | 산업기사(섬유, 섬유디자인, 패션 <sup>1</sup><br>자인, 패션머천다이징, 편물, 품질 <sup>2</sup><br>영, 산업안전)         |  |
| 공업<br>(화공)<br>(가스) | 기술사(화공, 세라믹, 화공안전, 가스,<br>식품, 품질경영)  | 기사(화공, 화약류제조, 세라믹, 산업<br>안전, 가스, 식품, 품질경영)<br>기능장(위험물, 가스)  | 산업기사(화공, 화약류제조, 세라드<br>위험물, 산업안전, 가스, 식품, 품질<br>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공업<br>(자원)         | 기술사(자원관리, 화약류관리, 해양,<br>응용지질, 지질 및 지반)   | 기사(광산보안, 화약류관리, 해양환<br>경, 해양자원개발, 해양공학, 응용지<br>질)   | 산업기사(광산보안, 화약류관리, 학, 해양조사)  |  |
| 농업<br>(농업)         | 기술사(종자, 원예, 농화학, 식품)   | 기사(종자, 원예, 식물보호, 농화학,<br>식품, 생물공학)  | 산업기사(종자, 원예, 식물보호,<br>품)  |  |
| 농업<br>(축산)         | 기술사(종자, 산림, 농화학, 조경)   | 기사(축산, 식품)  | 산업기사(축산, 식품)<br>가축인공수정사   |  |
| 녹지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종자, 산림, 농화학, 조경)   | 기사(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농화학, 조경)<br>기능장(산림)  | 산업기사(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조경)  |  |
| 수의                 | 수의사  |   |   |  |
| 해양수산<br>(수산)       | 기술사(해양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<br>리, 식품, 수질관리)  | 기사(해양환경, 해양자원개발, 해양<br>공학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리, 식품,<br>항로 표지, 수질환경)  | 산업기사(해양조사, 수산양식, 어'<br>생산관리, 식품, 항로표지, 수질환경   |  |
| 해양수산<br>(선박)       | 기술사(조선, 기계제작, 산업기계설비)<br>1·2급항해사, 1·2급기관사  | 기사(조선, 일반기계, 항로표지) 3 ·<br>4급 항해사, 3 · 4급 기관사  | 산업기사(조선, 컴퓨터응용가공, 로표지)<br>5·6급 항해사, 5·6급 기관사  |  |
| 보건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산업위생관리, 식품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방사선관리)<br>방사선관리)<br>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), 방사선취급감독자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 | 기사(산업위생관리, 식품, 대기환경,<br>수질환경, 소음진동<br>폐기물처리, 임상심리사 1급, 응급구<br>조사 1급)<br>의무기록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<br>(일반), 영양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<br>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<br>생사, 간호사, 조산사, 작업치료사,<br>위생사 | 산업기사(산업위생관리, 식품, 대<br>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;<br>리, 임상심리사 2급, 응급구조사<br>급)                  |  |
| 식품위생               | 기술사(축산, 식품, 품질경영, 포장,<br>방사선관리)  | 기사(축산, 식품, 품질경영, 포장),<br>영양사, 위생사   | 산업기사(축산, 식품, 품질경영,<br>장)  |  |

보

시

| 계급<br>직렬            | 5 급  | 6급 • 7급   | 8급 • 9급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
| 의료기술                | 기술사(방사선관리), 방사성동위원<br>소취급자(특수), 방사선취급감독자,<br>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, 한약<br>사  |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임상<br>병리사, 의무기록사, 방사선사, 물리<br>치료사, 치과 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<br>업치료사, 간호사<br>기사(응급구조사 1급, 의지·보조<br>기)  | 사업기사(응급구조사 2급)   |
| 의무                  |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 |   |  |
| 약무                  | 약사, 한의사, 한약사   |   |  |
| 간호                  |  | 간호사, 조산사  |  |
| 보건진료                |  | 간호사, 조산사  |  |
| 환경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<br>동, 폐기물처리, 화공, 토질 및 기초,<br>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수자원개<br>발, 상하수도, 토목시공, 조경, 산림,<br>농화학, 해양, 화공안전, 산업위생관<br>리, 지질 및 지반, 기상예보) 의사, 약<br>사, 수의사 | 기사(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<br>폐기물처리, 화공, 건설재료시험, 토<br>목, 조경, 산림, 해양환경, 농화학, 산<br>업위생관리, 응용지질, 기상)<br>기능장(산림)<br>위생사 | 산업기사(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<br>진동, 폐기물처리, 화공, 건설재료<br>험, 토목, 조경, 산림, 해양조사, 산<br>위생관리) |
| 항공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항공기관, 항공기체, 정보통<br>신), 운송용조종사  | 기사(항공, 정보통신, 무선설비, 방송<br>통신)<br>기능장(항공정비, 통신설비)<br>항공공장정비사, 사업용조종사, 항공<br>사, 항공정비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<br>공기관사, 운항관리사 | 산업기사(항공, 정보통신, 무선설)<br>방송통신)<br>자가용조종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<br>(도시계획)        | 기술사(토질 및 기초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교통), 건축사  | 기사(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<br>건축, 조경, 지적, 도시계획, 교통)<br>기능장(건축일반시공)   | 산업기사(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<br>보, 건축, 건축일반시공, 조경, 지<br>지적기능, 교통)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<br>(토목,<br>수도토목) | 기술사(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<br>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<br>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<br>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<br>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건설<br>안전, 지질 및 지반, 교통)                | 기사(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, 토목,<br>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<br>경, 지적, 건설안전, 응용지질, 교통)  | 산업기사(건설재료시험, 철도토-<br>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기적, 건설안전, 교통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<br>(건축)          | 기술사(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<br>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축전기설<br>비, 건설안전, 소방) 건축사  | 기사(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<br>안전, 소방설비)<br>기능장(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<br>공)   | 산업기사(건축설비, 건축일반시<br>건축, 건축목공, 실내건축, 건설안<br>소방설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<br>(지적)          | 기술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<br>정보)   | 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)  | 산업기사(지적, 지적기능, 측량<br>지형공간정보)   |
| 시설<br>(측지)          | 기술사(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)   | 기사(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)   | 산업기사(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<br>적, 지적기능)  |
| 시설<br>(교통)          | 기술사(교통, 도시계획, 조경, 측량<br>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, 토질 및 기<br>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도로 및<br>공항, 철도, 토목시공, 건설안전)   | 기사(교통, 도시계획조경, 측량 및<br>지형공간정보, 지적, 건설재료시험,<br>철도토목, 토목, 건설안전)   | 산업기사(교통, 조경, 측량 및 지<br>공간정보, 지적, 지적기능, 철도토-<br>건설재료시험, 토목, 건설안전)             |

시

보

| 계급<br>직렬             | 5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급 • 7급  | 8급 • 9급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방송통신<br>(통신사)        | 기술사(정보통신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전자응용)  | 기사(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전자,<br>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, 컴퓨<br>터시스템응용)<br>기능장(전자기기, 통신설비)   | 산업기사(정보통신, 통신선로, 사무자동화, 전파전자통신, 전자, 정보처리, 정보기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컴퓨터시스템응용)   |
| 방송통신<br>(통신기술)       | 기술사(정보통신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전자응용)  | 기사(정보통신, 무선설비, 전자, 방송<br>통신, 정보처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<br>전파전자통신)<br>기능장(전자기기, 통신설비)   | 산업기사(정보통신, 통신선로, 사무자동화, 무선설비, 전자, 정보처리, 정보기술, 방송통신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전파전자통신)   |
| 방송통신<br>(전자통신<br>기술) | 기술사(정보통신, 전자응용, 컴퓨터<br>시스템응용) | 기사(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전자,<br>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, 컴퓨<br>터시스템응용)<br>기능장(전자기기, 통신설비)   | 산업기사(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전자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처리, 정보기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전파전자통신, 통신선로)   |
| 위생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식품, 축산, 품질경영, 포장)<br>기사(식품, 축산, 품질경영, 포장)<br>위생사, 영양사  | 산업기사(식품, 축산, 품질경영, 포<br>장)<br>환경기능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관리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능장(전기)<br>기사(전기, 토목, 건축설비, 건축, 소<br>방설비<전기분야, 기계분야>, 조경)  | 산업기사(전기, 기계정비, 토목, 건축설비, 건축, 소방설비<전기분야, 기계분야>, 조경)<br>기능사(전기, 기계정비, 조경) |
| 토목운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토질및기초, 토목품질시험,<br>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및공<br>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<br>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<br>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<br>건설안전, 지질 및 지반, 교통)<br>기사(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, 토목,<br>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<br>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응용지질, 교<br>통) | 산업기사(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,<br>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<br>지적, 건설안전, 교통)             |
| 건축운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축전기설비, 건설안전, 소방)기사(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)기능장(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)건축사  | 산업기사(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<br>건축, 건축목공, 실내건축, 건설안<br>전, 소방설비)                   |
| 통신운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정보통신)<br>기사(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무선<br>설비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자)<br>기능장(통신설비, 전자기기)   | 산업기사(정보통신, 통신선로, 사무<br>자동화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<br>방송통신, 전자, 정보처리, 정보기<br>술)  |
| 전기운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<br>기응용, 철도전기신호, 전기안전,<br>품질경영)<br>기사(전기, 철도전기신호, 산업안전,<br>소방설비<전기분야>, 품질경영, 승<br>강기)<br>기능장(전기)  | 산업기사(전기, 철도전기신호, 산<br>업안전, 소방설비<전기분야>, 품질<br>경영, 승강기)                   |

| 계급<br>직렬                 | 5 급 | 6급 • 7급   | 8급 • 9급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|
| 기계운영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기술사(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, 용접, 금형,<br>산업기계설비, 정보통신, 기계안전, 공<br>장관리, 품질경영)<br>기사(일반기계,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기계설계,<br>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<br>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정보<br>통신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<br>소방설비<기계분야>)<br>기능장(기계가공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<br>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<br>금형제작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배관) | 산업기사(윤활관리, 컴퓨터응용가<br>공, 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기<br>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<br>철도차량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<br>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치공<br>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금형, 기계<br>정비, 판금제관, 농업기계, 배관, 정<br>보통신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소<br>방설비<기계분야>, 품질경영, 영<br>사) |
| 화공운영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기술사(화공, 세라믹, 화공안전, 가스,<br>품질경영, 식품)<br>기사(화공, 화약류제조, 세라믹, 산업안<br>전, 가스, 품질경영, 식품)<br>기능장(위험물, 가스)   | 산업기사(화공, 화약류 제조, 세라<br>믹, 위험물, 산업안전, 가스, 품질경<br>영, 식품)   |
| 가스운영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기술사(가스, 화공, 화공안전)<br>기사(가스, 화공, 산업안전)<br>기능장(가스, 위험물)   | 산업기사(가스, 위험물, 화공)  |
| 선박항해<br>운영<br>선박기관<br>운영 |     | 기술사(조선, 기계제작, 산업기계설비)<br>기사(조선, 일반기계, 항로 표지)<br>1·2·3·4급 항해사<br>1·2·3·4급 기관사  | 산업기사(조선, 컴퓨터응용가공, 항<br>로표지)<br>5·6급 항해사<br>5·6급 기관사  |
| 농림운영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기술사(종자, 산림, 축산, 농화학, 조경,<br>식품)<br>기사(종자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축산,<br>산림, 농화학, 조경, 식품, 생물공학)<br>기능장(산림)  | 산업기사(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<br>물보호, 축산, 조경, 식품)   |
| 보건운영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기술사(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)<br>기사(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)<br>위생사, 작업치료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・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, 수의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간호사, 조산사, 의무기록사, 영양사, 임상병리사 1급, 응급구조사 1급   | 식품)  |

# 2 연구사

| 계급                     | 연 구 사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직렬                     |  |
| 공 업 연 구                | 기술사(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금속재료, 표면처리, 금속가공, 금속제련, 비파괴검사, 화공, 세라믹,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전기신호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, 정보통신, 조선, 항공기관, 항공기체, 섬유, 의류, 자원관리, 화약류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 해양, 지질 및 지반, 제품디자인, 원자력발전, 방사선관리, 기계안전, 화공안전, 전기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, 가스, 공장관리, 품질경영, 포장, 식품) 기사(일반기계,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기계설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금속재료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누설비파괴검사, 화공, 화약류제조, 세라믹, 전기, 철도전기신호, 산업계측제어, 전자, 컴퓨터시스템응용, 반도체설계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조선, 항공, 섬유, 의류, 광산보안, 화약류관리, 해양환경, 해양자원개발, 응용지질, 제품디자인, 시각디자인, 컬러리스트, 원자력발전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 포장, 광학, 승강기, 식품) |
| 농 업 연 구                | 기술사(종자, 원예, 농화학, 섬유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식품)<br>기사(종자, 원예, 식물보호, 농화학, 생산자동화, 섬유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식품, 생<br>물공학)<br>위생사, 영양사, 평생교육사 1·2급   |
| 중합원 T  <br>  (총 21)    | 기술사(축산, 식품, 폐기물처리)<br>기사(축산, 식품, 폐기물처리, 생명공학)<br>수의사   |
| 농업연구<br>(농 공)          | 기술사(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비파괴검사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도시계획, 조경, 기계안전, 화공안전, 전기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, 가스, 품질경영)<br>기사(일반기계,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기계설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누설비파괴검사, 토목, 도시계획, 조경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식품, 농화학, 축산)<br>기사(식품, 생물공학, 축산)<br>영양사, 위생사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종자, 산림, 농화학, 조경)<br>기사(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농화학, 조경)  |
| 해 양<br>수산연구            | 기술사(해양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리, 식품, 수질관리)<br>기사(해양환경, 해양자원개발, 해양공학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리, 식품, 수질환경, 생명공학)  |
| 보건연구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식품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산업위생관리, 방사선관리)<br>기사(식품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산업위생관리)<br>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・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, 간호사,<br>조산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   |
| 환경연구                   | 기술사(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화공,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토목시공, 조경, 산림, 농화학, 해양, 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, 지질 및 지반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)<br>기사(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화공, 건설재료시험, 토목, 조경, 산림, 농화학, 해양환경, 산업위생관리, 응용지질, 기상)<br>의사, 수의사, 약사, 위생사  |
| 시 설 선 구  <br>  ( E 모 ) | 기술사(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<br>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지질지반, 교통)<br>기사(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응용지질, 교통)   |
| 시설선주 <br> (권 츠)        | 기술사(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축전기설비, 건설안전, 소방)<br>기사(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소방)<br>건축사   |

#### 3. 지도사

| 계급<br>직렬 | 지 도 사   |
|----------|---|
| 농촌지도     | 기술사(종자, 원예, 산림, 축산, 농화학, 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기계안전, 건설안전, 식품, 지질 및 지반, 폐기물처리, 섬유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식품) 기사(종자, 원예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축산, 농화학, 일반기계,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기계설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건설재료시험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식품, 응용지질, 폐기물처리, 섬유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식품) 수의사, 청소년지도사, 위생사, 영양사, 평생교육사 1·2급, 생산기사 2급(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) |
| 어촌지도     | 기술사(해양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리, 식품, 수질관리)<br>기사(해양환경, 해양자원개발, 해양공학, 수산양식, 어업생산관리, 식품, 수질환경)   |

비고: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 점평정을 할 수 없다.

#### 4. 삭제

### 4.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<수정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정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| 0.5  |
|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    | 0.25 |

비고: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 점평정을 할 수 없다.

#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

### O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

| 영어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제2외            | 국어 공통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한국외국어대 등<br>어학능력검정 | 토플<br>(TOEF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토익<br>(TOEIC) | 텝스<br>(TEPS) | 플렉스<br>(FLEX) | 스널트<br>(SNULT) | 플렉스<br>(FLEX) | 평정점  |
| 90점 이상             | PBT 630점 이상<br>CBT 263점 이상<br>IBT 108점 이상 |               | 900점 이상      | 900점 이상       | 70점 이상         | 850점 이상       | 0.25 |
| 80점 이상             | PBT 590점 이상<br>CBT 243점 이상<br>IBT 97점 이상  | 870점 이상       | 800점 이상      | 800점 이상       | 60점 이상         | 750점 이상       | 0.20 |
| 70점 이상             | PBT 567점 이상<br>CBT 227점 이상<br>IBT 86점 이상  | 790점 이상       | 700점 이상      | 700점 이상       | 50점 이상         | 650점 이상       | 0.15 |

| 일본                   | <u></u> 는어            | 중국어                  | 프랑스어                 | 스페인어         | 러시아어           | 독일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일본어<br>능력시험<br>(JPT) | 일본어<br>능력시험<br>(JLPT) | 한어<br>수평고시<br>(신HSK) | 델프/달프<br>(DELF/DALF) | 델레<br>(DELE) | 토르플<br>(TORFL) | 괴테어학검정시험<br>(Goethe Zertifikat) | 평정점  |
| 840점 이상              | N1 100점<br>이상         | 6급 180점 이상           | DALF C1 이상           | C1 이상        | 2단계 이상         | GZ C1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0.25 |
| 740점 이상              | N2 150점<br>이상         | 5급 210점 이상           | DELF B2 이상           | B2 이상        | 1단계 이상         | GZ B2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0.20 |
| 640점 이상              | N2 100점<br>이상         | 5급 180점 이상           | DELF B1 이상           | B1 이상        | 기본단계<br>이상     | GZ B1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0.15 |

### 2 그 밖의 자격증 <삭제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정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| 0.5  |
|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    | 0.25 |

[별표 16]

# 가 산 점 부 여 기 준 (제25조의3 관련)

O 가산점 구분에 따른 부여기준

| 「지방공무원<br>평정규칙」<br>관련 조항 | 구 분  | 부여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여가점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|----|
|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증  | 「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<br>별표15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<br>자 | -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<br>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: 0.5<br>점<br>-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<br>에 해당하는 자격증 : 0.25<br>점<br>- 최대 0.75점<br>※ 자격증 2개 이상인 경우 가산<br>점 높은 1개만 가산점 부여(외<br>국어 자격증은 중복부여 가<br>능) |    |
| 제24조제1항                  | 특정업무 |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*를 계<br>급변동 없이 상시 담당한 자        | -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<br>해 1개월마다 0.05점 / 최대<br>0.75점   |    |
| 제25조의2                   | 실적가점 | 「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」에 의함</b>  |    |

- \* 다음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
  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  - 나.「자연재해대책법」
  - 다. 「소하천정비법」
  - 라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  - 마.「재해구호법」
  - 바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  - 사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  - 아. 「저수지、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  - 자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
  - 차.「지진、화산재해 대책법」
  - 카. 「풍수해보험법」
  - 타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  - 파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처 케   | 게 7 시  |
|---|--|
| 현 행<br>   | 개 정 안  |
| 제25조의2(자격증가점) <u>지방공무</u> <u>원평정규칙</u>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[별 표 15]와 같다. | 제25조의2(자격증가점) <u>지방공무</u><br><u>원평정규칙 제25조의3</u><br>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)<br>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제25<br>조의3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<br>은 [별표 16]과 같다.  |
| <신 설>   | 제29조(다면평가의 방법,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) ①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, 동료,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시정 기여도・업무추진실적・업무처리능력・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③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,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으며,역량개발・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. |

#### 혅 행

# [별표15]

### 일반작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(제25조의2 관련) 2. 그 밖의 자격증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정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<br>인정하는 자격증 | 0.5  |
|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<br>자격증      | 0.25 |

## <신 설>

### [별표15]

일반작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(제25조의3 관련) 4.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

정

아

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정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<br>인정하는 자격증 | 0.5  |
|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<br>자격증      | 0.25 |

### [별표16]

#### 가 산 점 부 여 기 준 (제25조의3 관련)

O 가산점 구분에 따른 부여기준

| 「지방공무원<br>평정규칙」<br>관련 조항 | 구 분  | 부여대상   | 부여가점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|----|
|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증  | 「군산시 지방공<br>무원 인사규칙」<br>별표15에 해당하<br>는 자격증 소지자 | -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: 0.5점 -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: 0.25점 - 최대 0.75점 ※ 자격증 2개 이상인 경우 기산점 높은 1개<br>만 가산점 부여(외국어 자격증은 중복부여 가능) |    |
| 제24조제1항                  | 특정업무 | 재난 및 안전관<br>리 업무*를 계급<br>변동 없이 상시<br>담당한 자     | - 2년을 초괴하여 근무한<br>경력에 대해 1개월마<br>다 0.05점 / 최대 0.75<br>점   |    |
| 제25조의2                   | 실적가점 | 「군산시 지방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 평정 규정」에 의함  |    |

- \* 다음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
- 가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나.「자연재해대책법」

- 나. '사업세에네~~~ 다. 「소하천정비법」라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마. 「재해구호법」바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사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- 아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자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
- 차.「지진、화산재해 대책법」
- 자. 시전 되전세에 네무겁고 카. 「풍수해보험법」 타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」
- 파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군산시 고시 제2020-158호

#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「주택법」제15조 제6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### 군 산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
- 2. 사업주체

가. 명 칭 : ㈜은성종합개발

나. 대 표 자 : 유병성

다. 주 소: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,606호(어양동, 하모니시티)

- 3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: 2020년 11월 16일
- 4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

가. 사업위치 :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 외 64필지

나. 주택구분 : 민영주택

다. 대지면적 : 42,050.8 m²

라. 건축면적 : 11.111.1234m²(건폐율 : 26.42%)

마. 연 면 적 : 144,478.6342m² (용적율 : 221.6%)

바. 건축규모 : 지하 3층~지상 29층 /아파트 10개동 외. 665세대

### 사. 주택공급 계획

| 형별   | 주택구분 | 세대수 | 전용면적(m²) | 공용면적(m²) | 공급면적(m²)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계    |      | 665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
| 84A  | 민영주택 | 265 | 84.9784  | 25.4497  | 110.4281 |    |
| 84B  | 민영주택 | 109 | 84.9435  | 26.5364  | 111.4799 |    |
| 118  | 민영주택 | 149 | 118.3206 | 33.7501  | 152.0707 |    |
| 146  | 민영주택 | 112 | 146.4053 | 40.5209  | 186.9262 |    |
| 132A | 민영주택 | 12  | 132.4742 | 40.1198  | 172.5940 |    |
| 132B | 민영주택 | 5   | 132.4776 | 41.9167  | 174.3943 |    |
| 178  | 민영주택 | 7   | 178.6978 | 50.8328  | 229.5306 |    |
| 227  | 민영주택 | 6   | 227.8129 | 63.0713  | 290.8842 |    |

아.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구조

자. 사 업 비 : 294,312,436천원

차. 사업기간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~ 2023년 12월 30일

### 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| 도면<br>구분 표시<br>번호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,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구 역 명 | 위 치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            | 변 경 | 변경후        | 비고       |  |
| 신설                | 58    | 지곡동 공동주택<br>지구단위계획구역 | 군산시 지곡동<br>산66번지 일원 | _   | 증)45,331.0 | 45,331.0 |  |

### 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| 구분 | 도면표시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 | 면적(m²)   | 결정사유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신설 | 58         | 군산시 지곡동<br>산66번지 일원 | 45,331.0 |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<br>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<br>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|

### 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# 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|    |    | π  | - 모 |           |          | 연장            | 위            | 치             | 사용       | 주요              | 최초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 | 폭원<br>(m) | 기능       | (m)           | 기점           | 종점            | 형태       | 경과지             | 결정일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|
| 신설 | 중로 | 2  | 188 | 15        | 국지<br>도로 | 47            | 대로2-9        | 나운동<br>1494-2 | 일반<br>도로 | _               | 금회                  | 노선<br>신설 |
| 신설 | 소로 | 1  | 475 | 10        | 국지<br>도로 | 30            | 중로2-13       | 지곡동<br>313-2  | 일반<br>도로 | _               | 급회                  | 노선<br>신설 |
| 기정 | 중로 | 1  | 14  | 20~23     | 보조<br>간선 | 1,030         | 나운동<br>광로2-3 | 나운동<br>대로2-9  | 일반<br>도로 | 나운3택지           | 전북고41<br>('95.3.28) |          |
| 변경 | 중로 | 1  | 14  | 20~24     | 보조<br>간선 | 1,030<br>(70) | 광로2-3        | 대로2-9         | 일반<br>도로 | 나운3택지           | 전북고41<br>('95.3.28) | 폭원<br>확장 |
| 기정 | 중로 | 2  | 13  | 15~18     | 집산<br>도로 | 850           | 지곡동<br>대로1-2 | 지곡동<br>대로2-11 | 일반<br>도로 | 나운3택지<br>지곡신시가지 | 전북고41<br>('95.3.28) |          |
| 변경 | 중로 | 2  | 13  | 15~18     | 집산<br>도로 | 850<br>(200)  | 지곡동<br>대로1-2 | 지곡동<br>대로2-11 | 일반<br>도로 | 나운3택지<br>지곡신시가지 | 전북고41<br>('95.3.28) | 폭원<br>확장 |

### ○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| 변경전<br>도로명 | 변경후<br>도로명  |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_          | 중로<br>2-188 | • 노선 신설<br>- L=47m, B=15m   | •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<br>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|    |
| _          | 소로<br>1-475 | ● 노선 신설<br>- L=30m, B=10m   | • 현황도로 단절에 따른 대체도로 신설                |    |
| 중로<br>1-14 | 중로<br>1-14  | • 일부구간(L=70m) 폭원확장(B=증 4m)  | •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<br>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|    |
| 중로<br>2-13 | 중로<br>2-13  | ● 일부구간(L=200m) 폭원확장(B=증 3m) | •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<br>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|    |

### ○ 공공공지 결정조서

| 구분 | 표시 | 기기대              | ما <u>-</u> ا  |    | 면 적(m²) | )   | 최초  | ul –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   | 번호 | 보호 시설명<br>보호 시설명 | 위치             | 기정 | 변경      | 변경후 | 결정일 | 비고   |
| 신설 | 39 | 공공공지             | 지곡동 313-1번지 일육 | _  | 증) 592  | 592 | 금회  |      |

## ○ 공공공지 결정사유서

| 구분 | 표시<br>번호 | 시설명  | 결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결정사유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|---|--|----|
| 신설 | 39       | 공공공지 | ● 공공공지 신설<br>- A=592㎡<br>(L=148m, B=4m) | <ul> <li>공동주택부지 남측 일원에 공공공지<br/>결정을 통한 도시 확장성 제고 및<br/>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확보</li> </ul> |    |

호

### 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보

시

| 드립비중     | 가구번호      | 면정(m²)      | 획 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/u> | 기기 원호<br> | 면적(m²)      | 획지번호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| 면적(m²)                     | H  <u>17</u>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1-①             |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   | 42,050.8                   | 공동주택용지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1-2             | 나운동 174-18번지 일원 | 745.0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용지<br>(중로2-188)    |
|          | 1BL       | BL 45,331.0 | 1-3             | 나운동 1494-2번지 일원 | 791.0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용지                 |
| _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45,331.0        |                 | 720 1101 112 7 22          | 101.0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1-④             | 지곡동 606번지 일원    | 849.2                      | - 중로1-14<br>- 중로2-13 |
|          |           | 1-⑤         | 지곡동 147-12번지 일원 | 895.0           | 도로(소로1-475) 및<br>공공공지(39호) |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| 도면번호 | 위 치 | 구 분 | 계획내용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|  |
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-    |     | 용 도 | • 지정용도 : 공동주택,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| _          |  |
|      | 1-① | 건폐율 | <ul><li>35% 이하</li></ul>   | 조례 60% 이하  |  |
|      | 1-① | 용적률 | <ul><li>235% 이하</li></ul>  | 조례 250% 이하 |  |
|      |     | 높 이 | • 29층 이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

### 4)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|--|
|      | <ul> <li>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</li> <li>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</li> </ul> |
|      | •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변도로 | - 중로2-188호선 신설(L=47m, B=15m) : 주출입도로 개설  |
| 신설 및 | - 소로1-475호선 신설(L=30m, B=10m) : 대체도로 개설   |
| 폭원확장 | - 중로1-14호선 일부구간(L= 70m) 확폭개설 : B=증 4m  |
|      | - 중로2-13호선 일부구간(L=200m) 확폭개설 : B=증 3m  |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: 실음생략

6. 관계도서는 군산시청(주택행정과 ☎063-454-3712)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군산시 고시 제2020-159호

### 군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군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 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2020년11월17일군산시장

1.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가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 조서

| 구. | ㅂ. | 도면<br>표시 | 시 설 명 | 시설의<br>종류     | 설의 위치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m²) |          |       | 최초 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
| 7  | 正  | 표기<br>번호 | 기결정   | 종류            | Π Λ  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| 변경       | 변경후   | 결정일 | 山工 |
| 신- | 설  | 29       | 공공청사  | 미성동<br>행정복지센터 | 군산시 산북동<br>2479-3번지<br>일원 | -      | 증) 3,640 | 3,640 | 금회  |    |

#### ▶ 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

| 건폐율(%) | 용적률(%) | 높이(층) |
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20%이하  | 100%이하 | 4층 이하 |

### 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 사유서

| 도면<br>표시<br>번호 | 시 설 명 | 결 정 내 용             | 결 정 사 유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·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부지면적으로 인하여 |  |  |
| 29             | 공공청사  | · 공공청사 신설, A=3,640㎡ | 지역주민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있어 행정복지센터를 이잔신축            |  |  |

2.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: 게재생략

군산시 고시 제2020 - 160호

# 군산시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

군산시 소룡동 일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[군산시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」에 대하여 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19조,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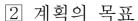
# 군산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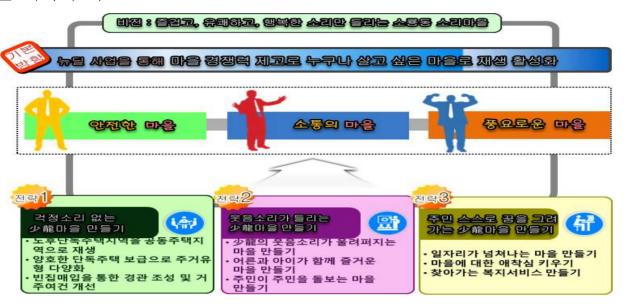
####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

|              | 사업명   | 사업유형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(억원)           | 사업기간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개요 및 범위      | 소룡동 소리마을<br>만들기   | <sup>을</sup> 주거지지원형 | 152.2<br>(마중물 140) | 2020~2023년 |  |  |
|              | <b>사업위치</b> 군산시   | 소룡동 1393-166번지      | 일원 사업면적            | 76,975 m²  |  |  |
|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| 군산시장, 소룡동 주민협의체 등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
| 사업 필요성       | ■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편익시설 설치로 정주<br>여건개선 필요<br>■ 거점시설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장 마련 및 둥지내몰림 방지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
| 사업내용 및 효과    | ■ 마중물사업(15개사업), 지자체사업(1개사업) 상세 ③ 참조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
| 재원조달방안       | 마중물사업비 140억원(도비84/시비56) 연차별 확보를 통한<br>사업추진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|

#### 활성화계획도







###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
### 가. 도시재생사업의 계획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| 단위사업                 | 세부사업         | 사업비   | 사업내용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|
|           | 걱정 소리                | 경관개선사업       | 5.8   | <ul><li>지붕수리 및 집수리사업</li><li>그린파킹 사업</li><li>연립주택 수리지원사업</li><li>집수리 아카데미 교육</li></ul> |
|           | 없는 소룡마을              |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  | 2.6   | · 마을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정주여건<br>개선사업 | 6.7   | · 소형공원 조성사업<br>· 나눔 텃밭조성사업<br>· 공용빨래방 조성사업   |
|           | 웃음소리가<br>들리는<br>소룡마을 | 소룡길 만들기      | 17.0  | · 안전한 보행길 조성<br>· 선형공원 조성<br>· 생활안전 마을 만들기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마을길 확장사업     | 19.6  | ·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  |
| 마중물<br>사업 |                      |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 | 45.4  | · 어울림센터 조성사업<br>· 이북5도민 음식체험<br>· 왁자지껄 공부방 운영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  | 15.3  | · 어울림 광장 조성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실버커뮤니티센터     | 9.8   | · 실버커뮤니티센터 조성<br>· 노인교실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점포 조성사업    | 5.4   | · 창업점포 조성<br>· 창업지원 컨설팅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돌봄전문가만들기     | 0.4   | • 주민공모사업(돌봄전문가 육성)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역량강화       | 4.0   | · 주민역량강화 교육 시행   |
|           | 거버넌스                 | 거버넌스 거버넌스 운영 |       | ·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<br>·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| 4.0   | ・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활성화 용역       | 1.0   | ·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|
|           | 합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140.0 |  |

<sup>※</sup> 향후 세부계획(설계) 수립,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### ④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
(단위: 억원, m²)

| 기반시설종류      | 단위사업명          | 사업비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규모)   | 사업내용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커뮤니티시설      | 어울림센터<br>조성사업  | 14.3 | 소룡동<br>1379-3<br>일원           | 마을카페,무인우편함,<br>주차장,교육시설,회<br>의실 등   부지면적<br>(A=1,425㎡)     | 수익시설, 교육, 왁자지껄<br>공부방 조성     이북5도 음식체험장     마을기업 사무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장          | 어울림광장<br>조성사업  | 15.3 | 소룡동<br>1379-4<br>일원           | <ul><li>소공원 및 광장</li><li>부지면적<br/>(A=800㎡)</li></ul>       | • 프리마켓, 마을축제, 휴식<br>소통의 공간 조성   |
| 주차장         | 공영주차장<br>조성사업  | 3.0  | 소룡동<br>139-24<br>139-39<br>일원 | <ul> <li>나대지를 매입<br/>공영주차장 조성<br/>(A=425m²)</li> </ul>     | <ul> <li>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영<br/>주차장 조성</li> <li>도로주차를 이동시켜 소방차<br/>진입로 확보</li> </ul> |
| 마을진입로<br>확장 | 마을길<br>확장사업    | 19.9 | 소 룡 동<br>1382-45<br>일원        | • 기존도로 확장<br>B=6m→12m<br>L=240m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마을진입도로 확장 및<br>인도확보로 통학로 확보   |
| 공원          | 선형공원<br>조성사업   | 5.5  | 소룡동<br>1393-54<br>일원          | <ul> <li>부지면적<br/>(A=2,381㎡)</li> <li>운동기구 및 정자</li> </ul> | • 선형공원 조성<br>• 안전한 보행길 조성   |
| 실버커뮤니티      | 실버커뮤니티<br>조성사업 | 9.8  | 소룡동<br>1393-28<br>일원          | <ul> <li>부지면적<br/>(A=264㎡)</li> <li>지상2층</li> </ul>        | • 현장지원센터<br>• 실버커뮤티니센터<br>• 노인교실 및 건강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공임대상가      | 창업점포<br>조성사업   | 5.4  | 소룡동<br>1473-4<br>일원           | <ul> <li>부지면적<br/>(A=200㎡)</li> <li>지상1층</li> </ul>        | • 창업교육실<br>• 창업Test Bed   |

5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: 해당없음

### 6 기타사항

- ㅇ 관련도서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30일간(2020. 11. 17. ~ 2020. 12. 16.)
- 열람장소 : 군산시 도시재생과(2층)
-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재생기획계(☎063-454-365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